

·잡업 대상 지원 사업에 698억 투입

세부사업명	단위	사업량	단가	사업비	시설내용
계				450	
·육묘포 설치	ha	1	30	30	·종자대, 비료대, 농약대, 토지임차료, 고용노력비 등
·재배시설	ha	20	5	100	·종묘대, 비료대, 농약대, 시설비 등
·조제시설	100평/동	1	200	200	·건축물(전기, 수도 등 부대 시설 포함) ·기기(선별기, 탈피기, 세척기, 탈수이송콘베어, 절단기, 건조기, 상송콘베어, 계측기, 자동포장기, 지게차)
·집하장	150평/동	1	120	120	·철근콘크리트 구조, 비닐판별

※개소당 사업단가는 315백만원(표준사업단가 450백만원의 70% 적용)

·차(기준면적 : 20ha)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단위	사업량	단가	사업비	시설내용
계				450	
·다원조성	ha	1	14.4	14.4	·개간비, 묘목대, 식재대 등
·생산기반 조성	ha	20	281.0	281.0	·관수시설(관정, 스프링), 방상기, 전정기, 자동채엽기 등
·제다시설	50평/동	1	209.6	209.6	·건축(전기, 수도 등 부대 시설 포함) ·기기(급엽기, 증기, 냉각기, 증엽기(증엽콘베어, 증엽투입, 증엽개량), 조유기, 유념기, 중유기, 건조기, 포장기 등 ·저온저장창고 30평1동

※개소당 사업단가는 315백만원(표준사업단가 450백만원의 70% 적용)

·잡업(기준면적 : 20ha)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단위	사업량	단가	사업비	시설내용
계				450	
·건조기	대	3	6.0	18.4	·생력기계화 및 시설현대화 시설위주로 지원하되 누에를 이
·냉동저장고	대	2	9.0	18.0	용한 건강보조식품
·분쇄기	대	2	8.5	17.0	생산·가공 시설비 등
·팽수확기	대	4	3.5	14.0	양잠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시설에 증점 지
·팽발관정	대	2	5.0	10.0	원
·자동은풍기	대	6	1.5	9.0	
·팽가지절단기	대	3	3.0	9.0	
·포장기	대	2	2.5	5.0	
·팽바관리기	대	2	2.0	4.0	
·자동소독기	대	2	1.5	3.0	

※개소당 사업단가는 315백만원(표준사업단가 450백만원의 70% 적용)

아. 우량농기자재 사용

·지원대상 농업기계중 농업기계 품질보증 대상기종인 경우에는 한국농기계 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 농업기계 구입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담당부서

·농림부 : 원예특작과(02)504-9421, 9422

·시·도 : 농산물유통과(경기, 충북, 경남), 유통특작과(강원, 경북), 농산과(충남, 전북, 전남), 특작과(제주)

·시·군(자치구) : 산업과

다. 지원대상자 선정

·정권자 : 시장·군수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중 차년도 지원 신청을 받아 지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예산요구

·우선순위결정

—시장·군수는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 지원대상자로서의 적정여부, 집단성, 재배경력, 추진력, 경영능력, 자부담 및 운전자금 확보능력, 조직의 경우 구성원의 적정여부와 경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항목과 배점기준을 설정하고 신청자별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점수를 매겨 고득점자순으로 우선순위 부여

·법인경영체의 조건

—총출자액이 1억원 이상인 법인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총 출자액의 50% 이상을 생산요소인 현물(농지, 시설등)로 출자한 법인

—운전자금이 충분히 확보된 법인

—법인 운영실적이 1년이상이고 구성원 2/3이상 해당분야 영농경력 3년이상인 법인

—상기법인중 버섯사업 법인으로써 규격출하 실적이 우수한 조직 우선 지원(농산물규격출하사업의 “활동기준”에 따라 상위등급조직부터 지원)

·논에 본사업과 관련하여 비외 타작물재배 및 시설설치시 차등지원

—대구획 재경지정리지역은 사업지역에서 제외

—농업진흥지역은 '97년부터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지역여건상 불가피하게 지원하여야 할 시는 시·도지사가 판단하여 허용

—'98사업은 사업비중 보조부문의 1/2을 용자로 전환

—'99사업은 보조전액을 용자로 전환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은 사업대상순위를 밭이나 산지보다 후순위 부여

·대상자 확정

—당해년도 예산이 확정되어 배정되는 결과에 따라 예산요구시 결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로 확정

—우선순위자가 사업포기시 포기서 징구

라. 사업시행

·사업시행 계획수립

—시장·군수는 예산과 지원대상자가 확정되면 즉시 품목별 표준사업의 세부사업별(menu)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세부사업의 시설내용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서는 안됨.)

—시·도지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사업시행계획의 변경

—시장·군수는 사업시행 계획수립후 품목별 세부사업간에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사유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변경승인 요청

—시·도지사는 개소당 사업단가 범위내에서 사업목적 및 지역특성에 적합하지등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자금지원

—용자 취급기관 : 농협

—용자취급기관은 용자금이 배정된 때에는 사업자별로 여신관리계좌에 입금하고 시·군의 사업주관과에 통

보

—사업자는 사업진도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용자금 취급기관에 용자신청

—용자취급기관은 시·군의 사업주관과에서 사업추진 실적확인을 받아 용자실행

—사업주관과는 용자 및 보조금 집행에 특별한 이유 없이 지연하여 사업의 부실화 또는 시행에 지장을 주어 민원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사후관리 책임자:시장·군수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처분제한기준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부터	까지		
·버섯종균배지생산시설	'98	2007	·사후관리기간중 임의로 양도·폐지등 처분 금지 —부득이한 사유로 처분하여야 할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용자지원기간 감안하여 설정
·버섯첨단재배시설				
·버섯저온저장고				
·생약조제시설				
·생약집하장				
·제다시설				

나. 보고사항

·사업시행계획(별지 제1호서식) : 1.31까지

·사업추진상황(별지 제2호서식) :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사업계획 변경 : 사업 변경승인시

·사업추진실적 및 보조금 정산결과(별지 제3호서식) : 익년도 1.31까지

다. 기타사항

·기타사항은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기본규정(농림부 훈령 제862호, '96.6.13)」 등에 의함.

6. '98년도 사업신청 및 대상자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농촌지도소 또는 시·군 사업담당과

나. 신청자격 : 제5항 <사업개요> “바”호의 지원대상자로 적합한자

다. 신청시기(농가) : '97.1.31까지

라. 신청절차

·신청서제출→사업신청서 검토(시·군)→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의(심사·선정)→시·도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 및 예산요구→농림부 예산요구 및 확보→시·도시달→시·군 시달→사업대상자 확정

마. 신청사업

·품목별 세부사업에 포함시켜야 할 사업과 세부사업별 사업내용을 발굴하여 사업비단가를 정확하게 산출하고 단가산출금기를 첨부하여 신청

바.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사. 대상자 선정

·'97대상자 선정방법과 같음

·발기반정비사업과 연계 실시

—본사업 대상지역이 『발기반정비사업』을 희망하는 지역은 시·군 발기반 정비사업 담당부서(건설과등)에 신청하여 사업에 우선 반영되도록 조치

—『발기반정비사업』을 신청한 대상지역은 본사업 추진기관인 시·군→시·도→중앙에 계통 보고하여 발기반 정비사업 담당부서와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사업에 반영되도록 조치

(2)지원규모 및 지원조건

·지원면적 : 버섯 1,200평, 생약 20ha, 차 20ha, 잡업 20ha

·지원조건

—지원비율 : 보조 20%, 용자 40(지방비 20%, 자부담 20)

—용자조건 : 연리 5%(·버섯 :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생약, 차, 잡업 : 3년거치 7년균분상환)

